



학교법인 광운학원 2022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 구 분 | 이사 | 감사 |
|------|-----|-----|
| 임원정수 | 8 인 | 2 인 |
| 재적임원 | 8 인 | 2 인 |
| 참석임원 | 6 인 | 2 인 |

1. 일 시 : 2022년 10월 25일(화) 14:00
(회의소집 통보일: 2022년 10월 17일)

2. 장 소 : 이사회 회의실 (원격영상회의 병행)

3. 회의 참석자

○ 참석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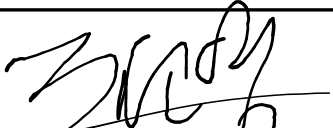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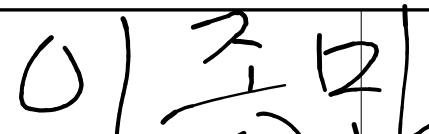
- 이사(6인) : 조선영 이사장, 이종수 이사, 이종민 이사, 배일환 이사, 김영만 이사, 이향철 이사 (불참 : 김기영 이사, 오승훈 이사)
- 감사(2인) : 배홍기 감사, 이동훈 감사

○ 참석 교직원

- 김재요 기획처장

4. 안 건

- 제2022-30호 : 법인 및 각급학교 2022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제2022-31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 제2022-32호 :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
 -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2) 기획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 제2022-33호 : 광운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 제2022-34호 : 광운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 제2022-35호 : 광운초등학교 교장 재임용 건
- 제2022-36호 : 법인 인사소위원회 구성 건
- 제2022-37호 : 창학 9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안) 제정 및 추진위원회 조직 건

| | | | |
|-----|---|--|-----|
| 간서명 |  |  | 김영만 |
|-----|---|--|-----|

□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 안건

5. 회의내용

□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개회 시간이 되어 조선애 간사가 참석 임원을 보고하자, 조선영 의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하다.

□ 제2022-30호 : 법인 및 각급학교 2022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2-30호 의안을 상정하고 조선애 간사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만장일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인 및 각급학교 2022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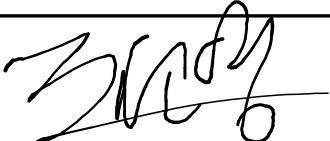

| 기관 | 2022학년도 제1차 추경액 | 2022학년도 본 예산액 | 증감액 | 비고 |
|------------|--------------------|------------------|-----------|----|
| 광운초등학교 | 7,478,376 | 6,816,936 | 661,440 | |
| 남대문중학교 | 5,492,019 | 4,946,619 | 545,400 | |
| 광운중학교 | 4,923,334 | 3,455,118 | 1,468,216 | |
|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 11,076,893 | 6,878,498 | 4,198,395 | |
| 광운대학교 | 120,360,047 | 116,457,751 | 3,902,296 | |

□ 제2022-31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2-31호 의안을 상정하고 조선애 간사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처리 여부를 묻자 이종민 이사의 동의와 이종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 이사 만장일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 붙임1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시행일 : 2022.10.25.)

| | | | |
|-----|---|--|-----|
| 간서명 |  |  | 김영만 |
|-----|---|--|-----|

(14:10 광운대학교 김재요 기획처장 입실함.)

□ 제2022-32호 :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2-32호 의안을 상정하고 김재요 기획처장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만장일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 안 건 | 심의결과 | 시행일자 | 비고 |
|------------------|------|-------------|---|
|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원안가결 | 2022.10.25. | |
| 기획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 2022.10.25. | 추후 기획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타 대학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검토 후 개정 권고 |

※ 붙임1 : 광운대학교 대학원통합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시행일 : 2022.10.25.)

(14:20 광운대학교 김재요 기획처장 퇴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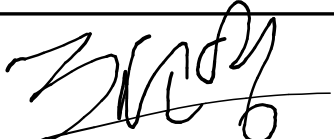

□ 제2022-33호 : 광운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2-33호 의안을 상정하고 조선애 간사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만장일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운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 안 건 | 심의결과 | 시행일자 |
|--------------------|------|-------------|
| 광운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 원안가결 | 2022.10.25. |

□ 제2022-34호 : 광운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 | | | |
|-----|---|--|-----|
| 간서명 |  |  | 김영만 |
|-----|---|--|-----|

조선영 의장은 제2022-34호 의안을 상정하고 조선애 간사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처리 여부를 묻자 배일환 이사의 동의와 이종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 이사 만장일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운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부결하기로 의결하다.

| 안 건 | 심의결과 | 시행일자 |
|------------------------|------|------|
| 광운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 부결 | - |

□ 제2022-35호 : 광운초등학교 교장 재임용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2-35호 의안을 상정하고 조선애 간사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만장일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운초등학교 교장 재임용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 현 소속 | 현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발령사항 | | | | 비고 |
|--------|------|----|------|--------|----|----------------------------------|-----------|----|
| | | | | 소속 | 직위 | 임기 | 일자 | |
| 광운초등학교 | 교장 | | | 광운초등학교 | 교장 | 2023.3.1.- 2026.2.28. (3년) | 2023.3.1. | 중임 |

□ 제2022-36호 : 법인 인사소위원회 구성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2-36호 의안을 상정하고 광운중학교,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장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교장 내부공모 및 교감 임명 등을 위해 법인 인사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조선애 간사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처리 여부를 묻자 김영만 이사의 동의와 이종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 이사 만장일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장 임명 방식 및 법인 인사소위원회 구성 건을 승인하기

| | | | |
|-----|---|--|-----|
| 간서명 |  |  | 김영만 |
|-----|---|--|-----|

로 의결하다.

- 광운중, 광운인공지능고 신임 교장 임명 방식 : 내부 공모
- 법인 인사소위원회 구성

| 구분 | 위원수 | 성명 | 위촉사항 | 위촉기간 | 비고 (기존임기) |
|----|-----|----|--|-----------------------------|-----------------------------|
| 이사 | 3 명 | | · 초·중·고등학교 교장자격인정대상자 이사회 심의 전 서류 및 면접심사 · 초·중·고등학교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이사회 심의 전 서류 및 면접심사 · 초·중·고등학교 일반직원 채용 면접심사 | 2022.11.09. -2023.11.08. | 2021.11.09. -2022.11.08. |

□ 제2022-37호 : 창학 9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안) 제정 및 추진위원회 조직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2-37호 의안을 상정하고 조선애 간사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만장일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학 9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안) 제정 및 추진위원회 조직 건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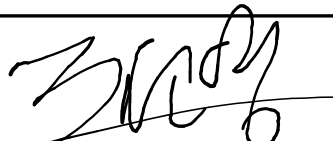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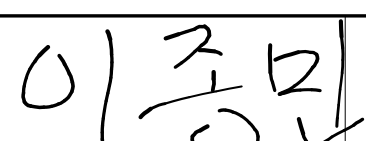
- 창학 9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안) 제정 : 원안대로 승인
- 창학 9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향철 이사
- 창학 9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외부위원 : 위원장(이사장)이 임명

조선영 의장은 광운중학교 및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 추가 이사회 소집 건을 상정하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2022학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 2022.11.29.(화)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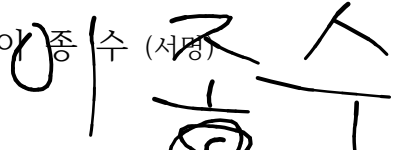
6.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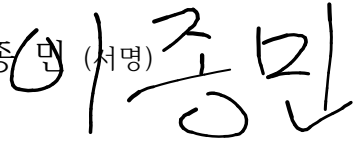
조선영 의장은 이상과 같이 모든 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15시 20분 폐회를 선언하다.

| | | | |
|-----|---|--|-------|
| 간서명 |  |  | 김 영 만 |
|-----|---|--|-------|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


이사장 조 선 영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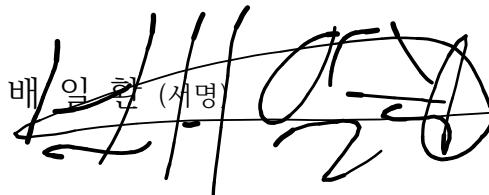
이 사 이 종 수 (서명) 


이 사 이 종 민 (서명) 


이 사 김 기 영 (서명)


이 사 오 승 훈 (서명)

이 사 김 영 만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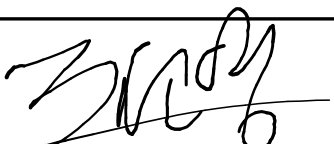

이 사 배 일 환 (서명) 

이 사 이 향 철 (서명) 

감 사 배 흥 기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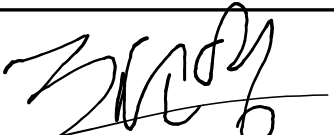

감 사 이 동 훈 (서명) 

2022. 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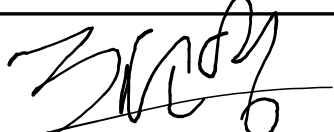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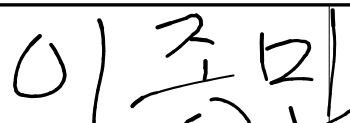
| | | | |
|-----|---|--|-------|
| 간서명 |  |  | 김 영 만 |
|-----|---|--|-------|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비 | 고 |
|------------------|--|------------------|--|---|--------|---|
| | | | | | (법령검토) | |
| 제5조(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학부,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및 입학정원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 3. 1, 2005. 9. 2, 2006. 3. 1, 2006. 10. 27, 2007. 1. 5, 2007. 8. 17, 2007. 12. 4, 2008. 5. 1, 2008. 6. 18, 2009. 2. 3, 2009. 10. 16, 2010. 2. 9, 2010. 8. 12, 2010. 12. 7, 2011. 7. 29, 2011. 11. 9, 2012. 12. 4,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5. 2. 6,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2019. 6. 26, 2019. 10. 23, 2020.08.26., 2021.02.03., 2021. 6. 22., 2021. 8. 24, 2021.12.28., 2022. 4. 18, 2022. 8. 23> | 제5조(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학부,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및 입학정원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 3. 1, 2005. 9. 2, 2006. 3. 1, 2006. 10. 27, 2007. 1. 5, 2007. 8. 17, 2007. 12. 4, 2008. 5. 1, 2008. 6. 18, 2009. 2. 3, 2009. 10. 16, 2010. 2. 9, 2010. 8. 12, 2010. 12. 7, 2011. 7. 29, 2011. 11. 9, 2012. 12. 4,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5. 2. 6,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2019. 6. 26, 2019. 10. 23, 2020.08.26., 2021.02.03., 2021. 6. 22., 2021. 8. 24, 2021.12.28., 2022. 4. 18, 2022. 8. 23, <u>2022. 10. 25</u> > | | | |
| 제44조(학위종별) |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위종별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개정 | 제44조(학위종별) |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위종별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개정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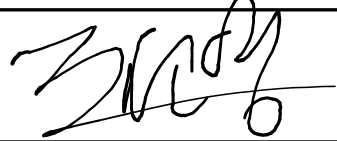

| | | | |
|-----|---|--|-----|
| 간서명 |  |  | 김명만 |
|-----|---|--|-----|

| 현행 | 개정안 | 비고 (법령검토) |
|--|--|--------------|
| <p>2005. 3. 1, 2011. 7. 29, 2011. 11. 9,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4. 11. 25,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2019. 10. 23, 2021. 02. 03, 2021. 8. 24, 2021.12.28., 2022. 4. 18></p> | <p>2005. 3. 1, 2011. 7. 29, 2011. 11. 9,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4. 11. 25,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2019. 10. 23, 2021. 02. 03, 2021. 8. 24, 2021.12.28., 2022. 4. 18, 2022. 10. 25></p> | |
| | <p>부칙 <2022. 10. 25></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상담심리치료학과 가족·청소년·조직상담전공 신설은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아동청소년전공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2023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소속 학과 및 전공에 적을 두기로 한다.(학위종별 “청소년학석사”는 재적생 수가 0명이 되고 난 뒤 폐지 예정)</p> | 부칙 신설 |

| | | | |
|-----|---|--|-----|
| 간서명 |  |  | 김명만 |
|-----|---|--|-----|

[별표 2] 특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 현행 | | | | | 개정(안) | | | | | 비고 | | | | |
|--|------------------------------|---|-------------|-------------|-------------|---|--|---|---|-------------|-------------|-------------|---|------------------|
| 대학원 | 학과 및 전공 | | 입학정원(석사) | | | 학위종별 (석사학위과정) | 대학원 | 학과 및 전공 | | | 입학정원(석사) | | | 학위종별 (석사학위과정) |
| | | | 2021 학년도 | 2022 학년도 | 2023 학년도 | | | | | 2021 학년도 | 2022 학년도 | 2023 학년도 | | |
| 상담 복지정책 대학원 <개정 2010. 2. 9> | 상담심리치료학과 | ◇ 상담심리치료전공 | 90 | 90 | 90 | 상담심리학석사(00 전공) <개정 2016. 8. 11, 2021.8.24> | 상담 복지정책 대학원 <개정 2010. 2. 9> | 상담심리치료학과 | ◇ 상담심리치료전공 ◇ <u>가족·청소년·조직 상담전공</u> <신설 2022.10.25> | 90 | 90 | 90 | 상담심리학석사(00 전공) <개정 2016. 8. 11, 2021.8.24.> 상담심리학석사(00 전공) <신설 2022.10.25.> | 전공 신설 |
| | 사회복지학과 | ◇ 사회복지전공 <신설 2012.12.04> ◇ 실버복지전공 ◇ 아동청소년전공 <개정 2012.12.04> | | | | 사회복지학과 | | ◇ 사회복지전공 <신설 2012.12.04> ◇ 실버복지전공 ◇ 아동청소년전공 <개정 2012.12.04> | 사회복지학석사(00 전공) <신설 2012.12.04> 사회복지학석사(00 전공) 청소년학석사(00전 공) <신설 2012.12.04.> <개정 2021.8.24> | | | | | |
| | 공공정책관리학과 <폐지 2019. 4. 17> | ◇ 행정관리전공 <개정 2010. 12. 7> <폐지 2019. 4. 17> ◇ 범죄학전공 <개정 2012.12.04.> <폐지 2019. 4. 17> | | | | 행정학과(00전공) <폐지 2019. 4. 17> 범죄학석사(00전공) <신설 2012.12.04.> <폐지 2019. 4. 17> | | 공공정책관리학과 <폐지 2019. 4. 17> | ◇ 행정관리전공 <개정 2010. 12. 7> <폐지 2019. 4. 17> ◇ 범죄학전공 <개정 2012.12.04.> <폐지 2019. 4. 17> | | | | 행정학석사(00전공) <폐지 2019. 4. 17> 범죄학석사(00전공) <신설 2012.12.04.> <폐지 2019. 4. 17> | |

| | | | |
|-----|--|---|-----|
| 간서명 |  |  | 김영만 |
|-----|--|---|-----|

[붙임2]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비고 (법령검토) |
|---|---|--|
| <p>제12조(일반직원 임용) <조항이동></p> <p>① 신규직원 채용은 직원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채용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단, 임시직 직원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변경2020.02.05.)</p> <p>② 법인의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변경2019.01.23.)(변경2019.08.21)</p> <p>③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임시직 직원은 학교장이 임용한다.(신설2019.01.23)</p> | <p>제12조(일반직원 임용) ① <u>각급학교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변경2022.10.25.)</u></p> <p>② <u>신규직원 채용은 직원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시직 직원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변경2020.02.05.)(변경2022.10.25.)</u></p> <p>③ <u><삭제>(변경2019.01.23.)(변경2019.08.21)(변경2022.10.25.)</u></p> <p>④ <u><조항이동><변경2022.10.25.></u></p> | <p>제3항의 내용을 이동하여 신설하고 일부조문 개정</p> <p><항 번호 변경></p> <p>법인의 일반직원도 ①항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p> <p><항 번호 변경 및 삭제></p> <p><제1항으로 이동></p>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 <p>부칙 신설</p> |

| | | | |
|-----|---|--|-----|
| 간서명 |  |  | 김명만 |
|-----|---|--|-----|